



화협상담실은  
보험과 안전점검, 방재기술지도 등  
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은 사항을  
풀어드립니다

### 방재상담

**☎** : 솔벤트가 저장된 옥외탱크로서 현재 탱크 자체는 1종 접지가 되어있고 5%두께의 금속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 낙뢰 피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피뢰설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답** : 우리나라 소방법에는 지정수량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생석회 및 제6류 위험물 제외)에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다만, 탱크의 재질이 3.2%이상의 금속재로 되어있고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접지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동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NFPA나 일본 JIS규정을 소개하면, 탱크자체가 충분한 접지(10Ω 이하)가 되어 있고 또한 탱크 두께가 NFPA는 4.8%, JIS는 3.2% 이상 일 때에는 별도의 피뢰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소유 위험물 탱크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건축구조상 「옹벽」의 정의는 무엇이며 지하상가에 있어서의 옹벽공사는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의 어느 쪽에 포함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옹벽」이란 흙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벽의 일종으로서 주로 언덕부분이라든지 지하구조물 공사시 토목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구축물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 지하층의 외벽도 옹벽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상가의 옹벽공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 중 공사비가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판정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의 공사에 관련된 서류(예 : 견적서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당건물은 일반 사무실용도의 내화구조 건물로서 층수는 지상 8층에 지하 2층, 연면적은 1,600㎡ 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피난기구의 설치가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 귀 건물은 소방법 시행령 제18조(제2종장소) 제9호에 의거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다음에 계기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피난기구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건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내장재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되어 있을 것.
3.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그리고 3층이상 및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되어 있을 것.
4.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을 것.
5. 복도에 2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을 것.
6.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을 것. ☐

## 설마설마 방심말고

## 조심조심 불조심

## 보험상담

**☞** 현재 귀 협회와 당점간에 질권설정되어 있는 4층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화재보험금액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타 은행으로 양도했을 경우, 그 물건의 손해발생으로(전체 또는 부분) 인한 보험금 지급시 지급방법에 있어서

1. 그 물건에 대해 제 1순위의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당점에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순위인 타 은행에 지급되는지

2. 화재보험금액중 양도금액비율에 따라, 또는 대출금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 : 귀 은행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일부를 타 은행에 질권양도(보통 보험금액의 분할 기재로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귀 은행이 선질권자라는 타 은행과의 합의내용이 증권배면상에 기재되어있지 않는 한 귀 은행은 타 은행과의 선후순위가 없는 단순한 공동질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은 질권설정된 보험금액비율로 지급받게 됩니다.

〈질의자 : 한국주택은행 · 응답자 : 기획조정실〉

**☞** 1. 가압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당 사가 부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보할 수 있다면 손해발생시 보험계약자인 당 사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 부보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 1. 보험계약은 소유자의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거나를 막론하고 타인 즉 소유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보험금수익권자는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귀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소유자와 합의하여 지급보험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2.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부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부보로서 초과보험이 된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은 무효이며 각 증권별로 안분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질의자 : 성업공사 · 응답자 : 기획조정실〉

**☞** 1층은 900m<sup>2</sup>로서 옥내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은 200m<sup>2</sup>로서 옥내판매장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층 통로는 1층 옥내판매장에 있

고 지하층은 고객의 출입이 없을 때

1. 화재법상의 특수건물(옥내판매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1층과 지하층을 합산하여 1, 100m<sup>2</sup>이므로 특수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면 1층과 지하층 사이의 복도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했을 때는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답** : 1. 화재법 시행령 제2조 1항 7호의「옥내판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함은 반드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장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를 촉진 또는 관리를 위한 장소 즉 판매장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의 보관소 또는 사무실 등이 판매장과 동일건물내에 연결해 있거나 상하층간에 위치해 있다면 이를 옥내판매장으로 제외할 수 없으므로 특수건물(옥내판매장)로 보아야 합니다.

2. 동일건물내(별동 건물내의 보관장소는 전혀 문제되지 않음) 동일통로를 사용하고 있는 1층과 지하층은 방화문이 설치되었다 하여도(다만 보험요율에는 차이가 있음) 화재에 대한 공동위험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옥내판매장용 창고로 사용하는 지하층을 특수건물(옥내판매장) 대상면적에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질의자 : 미도와 슈퍼마켓 · 응답자 : 기획조정실〉

**☞** 화재보험 국문증권 전기위험 특별약관에는 전기기기 또는 장치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화재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에서 면책금액을 빼고 보통약관 13항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전기기기 또는 장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동일한 물건을 기계(영문증권) 및 화재(영문증권 F. O. C with E. C. E)보험에 동시에 부보하였을 때에 그 손해액에서 면책금액을 빼고 기계 및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 : 전기적인 손해는 기계보험에서, 이로인한 화재손해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서 각각 보상하여 드리며 또한 면책금액은 기계보험이나 화재보험 공히 요율을 결정할 때 같이 결정됩니다.

〈질의자 : 아세아시멘트공업(주) · 응답자 : 기획조정실〉